

#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('26.7.8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: 권대영)는 7월 8일 제13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만호제강(주)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 또한 만호제강(주)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이재훈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유흥근 (02-3145-7737)



[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<b>만호제강(주)의 감사인 신한회계법인</b></p> <p>결산기 : 2019.6.30. 2020.6.30. 2021.6.30. 2022.6.30.</p>	<p><b>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: '19년 7,353백만원, '20년 11,196백만원, '21년 10,152백만원, 개별 : '22년 27,035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등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②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</p> <p>-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는 그 이후 도래하는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당해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</p>	<p><b>신한회계법인 :</b>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%</p> <p>- 만호제강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</p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p>- 만호제강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</p> <p>- 주권상장회사·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12시간</p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p>- 만호제강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</p> <p>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16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